# 12 ·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94 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권향엽·서미화·이수진

이병진 · 위성곤 · 임호선

주철현 • 양부남 • 박지원

한정애 • 윤종군 • 최민희

허성무 • 박민규 • 차지호

정진욱 • 김 윤 • 정일영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

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으로 극심 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, 피해지역 경제활성화,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권 리보장 및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이 법은 12 · 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

리보장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생활 및 심신의 안정과 피해지역 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- 나. 피해자의 권리로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참여,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, 생활·의료·심리·돌봄·법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권리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의 지급, 심리지원,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·건강·복지·돌봄·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).
- 라.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하고, 공동체 복합시설 등을 설치하고, 트라우마치유시설을 조성하며, 12·29여객기참사회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사업 등을 시행함(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).
- 마. 국회 및 유가족단체가 협의하여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·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함(안 제31조).

## 12 ·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생활 및 심신의 안정과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12·29여객기참사"란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.
- 2. "희생자"란 12·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.
- 3. "피해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12·29여객기참사 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
  - 나.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직 계존비속 · 형제자매(이하 "유가족"이라 한다)

- 4. "피해지역"이란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라남도를 말한다.
- 5. "유가족단체"란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피해자의 권리) 피해자는 12·29여객기참사에 대한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  - 1.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
  - 2.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
  - 3. 생활지원·의료지원·심리치료지원·일상생활돌봄지원·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
  - 4. 추모사업·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하는 등 참여할 권리
  - 5. 그 밖에 「대한민국헌법」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④ 국가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, 모욕,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(이하 "2차 가해행위"라 한다)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은 12·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 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### 제2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

- 제6조(지원의 원칙)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· 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·건강·복지·돌봄·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7조(피해자의 참여 보장)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
  ·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8조(생활지원금 등)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생활지원금: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
  - 2. 의료지원금: 피해자의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,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

소요되는 비용

- ② 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,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지원금에 대하여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9조(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) ① 국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·도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상법」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15세 미만 희생자가 제1항에 따른 단체보험에의 가입이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지 급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, 지급의 기준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심리상담 등의 지원등) ① 국가등은 피해자,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·치료) ① 국가는 피해자 가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

- 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일상생활돌봄 지원) 국가는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.
  - 1.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
  - 2.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
  - 3.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
- 제13조(근로자의 치유휴직)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"치유휴직"이라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  -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  -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)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

- 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교육비 등 지원과 특별전형 등) ① 국가등은 12·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·수업료·보육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.
  - 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
  -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
 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
  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 $12 \cdot 29$ 여객기참사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·중·고등학생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- 제16조(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등에 대한 특례)
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

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.

-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.
- ③ 12·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중증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)에 대해서는 「장애인활동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④ 국가등은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·기간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)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)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

- 여 관련 공공기관, 금융기관,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9조(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등)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피해지역의 항공 및 관광 관련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, 자금지원, 대출 보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20조(무안국제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) ① 국가등은 무안 국제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거점항공사(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 송사업자로서 소속 항공기를 역내공항에 등록하고 국제·국내 노선을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) 유치·지원 등 무안국제공항특별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3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

제21조(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・시행)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

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국적·인종·종교·성별·나이·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 민의 특성
- 2.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, 삶의 질 향상
- 3.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,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
- 4. 건강·복지·문화·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,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
-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·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·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- 제22조(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)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·복지·돌봄·노동·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·운 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3조(트라우마치유시설의 조성 등) ① 국가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트라우마 치유와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 또는 공간(이하 "시설등"이라 한다)을 설치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은 다른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등은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, 설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유가족단체 운영비 지원) ① 국가등은 유가족단체의 운영에 소 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유가족단체의 구성요건 및 운영비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추모사업 등 시행) ① 국가등은 12·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  - 1. 추모공원 조성
  - 2. 추모기념관의 건립
  - 3.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 및 조사·연구

- 4.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·교육과 이에 관한 각 종 간행물의 제작·배포
- 5. 추모비의 건립
- 6. 추모를 위한 문화예술행사
- 7. 그 밖의 관련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시행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)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(이하 "지원·추모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지원·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- 1. 생활지원금·심리상담·교육비 등 지원, 공동체 회복 지원, 교육 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
  - 2. 추모공원, 추모기념관,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
  - 3. 제29조에 따른 재단 및 제30조에 따른 유가족협의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지원·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④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,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.
- ⑤ 지원·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지원·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·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,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 다.
- ⑦ 지원·추모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위원 선임 절차,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) ① 지원·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, 추모기념관, 추모비(이하 "추모시설"이라 한다)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·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지원·추모 위원회가 정한다.
- 제28조(추모시설 설치 특례) ① 국가 등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「학교보건법」,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」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

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재단 출연 등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·2 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(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·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)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  - 1. 추모시설의 운영 · 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
  - 2.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  - 3. 피해자의 심리·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
  - 4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·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30조(유가족협의회의 설립·운영 등) ① 유가족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족단체(이하 "유가족협의회"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등은 유가족협의회(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인으로서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·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 단법인을 말한다)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 원을 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범위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사무공간 및 사무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·시설·장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에 대한 특례) ① 국회는 1 2·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, 같은 법 제4조에 따른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"사고조사위원회"라고 한다)의 위원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"사고조사위원회"라고 한다)의 위원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항공·철도사고조사단(이하 "사고조사단"이라한다)의 사고조사관을 각각 2인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·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·임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위촉·임명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위촉·임명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과 사고조사관의 업무의 범위는 12·29여객기참사의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.

## 제4장 보칙

제32조(비밀준수 의무)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·직원 또는 위원·직원이었던 자,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,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임·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

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·문서 ·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33조(2차 가해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12·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4조(자격사칭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·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지원·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위임·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지원·추모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5조(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- 제36조(부당이득의 환수)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,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  - 2.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

수한다.

- 제37조(12·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) ① 국가등은 「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이 12·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수 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(이하 "12·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"이라 한다)을 공개하여야 하며, 12·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.
  - ② 피해자는 12·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2·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.
  -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2·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 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.
- 제38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## 제5장 벌칙

- 제39조(벌칙)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신문·잡지·방송·출판물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토론회·간담회·기자회견·집회·가두 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·문서·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지원·추모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
  - 2.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·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 하여 지원·추모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
  - 3.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① 지원·추모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재단을 선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위촉·임명,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, 유가족협의회의 설립준비 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